

## 가계우대정기적금 특약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가계우대정기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, 적립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,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적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이다.

#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.

### 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5조 【가입금액】

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치(계약액) 한도는 5,000만원(이자포함)으로서 개인당 5,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이 불가하다. (계좌수 제한없음)

### 제6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- ②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기본이율은 가계우대적금 고시금리를 따른다.
- ③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우대이율은 다음과 같다.
  1. 웰빙우대저축을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면 연 0.1%p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  2. 인터넷뱅킹가입시 가계우대정기적금+연0.2%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
### 제7조 【중도해지 및 만기이율】

- ① 적금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(1개월미만 무이자)
- ② 만기후 이율은 정기적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### 제9조 【이자계산법】

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### 제8조 【기타】

-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,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.

## 부 칙

-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